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0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한정애·박홍배·송옥주

강훈식 • 정성호 • 부승찬

박홍근 • 이수진 • 이강일

복기왕 · 위성곤 의원

(119]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 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 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 상함(안 제88조).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350"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025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 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은 각각 제8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475

- 2. 2026년은 1만분의 500
- 3. 2027년은 1만분의 525
- 4. 2028년은 1만분의 550
- 5. 2029년은 1만분의 575
- 6. 2030년은 1만분의 600
- 7. 2031년은 1만분의 625
- ② 2025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95
- 2. 2026년은 1천분의 100
- 3. 2027년은 1천분의 105
- 4. 2028년은 1천분의 110
- 5. 2029년은 1천분의 115
- 6. 2030년은 1천분의 120
- 7. 2031년은 1천분의 12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u>1천분의 1</u>	<u>1</u> 천분의 <u>1</u>
<u>천200</u>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u>천350</u>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③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	
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 에 해당	<u>1천분의 65</u>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4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 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 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⑤ (생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 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 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 17. (생략)
-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u>1천분의 130</u>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u>20</u> 2	<u> 24년</u> -	
1.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u> </u>		
 <샄 제>		